

## 집합투자기구 정정

- 대상투자신탁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대상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변경내용 :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모투자신탁 신설(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및 관련 기재사항 정정
- 효력발생일 : 2019.01.17
- 변경대비표(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	모자형 전환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b>I. 집합투자기구 개요</b>			
집합투자기구 특징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 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	<u>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투자</u>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70% 이상으로 한다.
분류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u>모자형</u>
<b>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b>국내 주식</b> 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b>집합투자기구</b> 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 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b>종합주가지수</b>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b>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b> 으로서 <b>국내 주식</b> 에 주로 투자하는 <b>모투자신탁 수익증권</b> 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b>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b> 은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 플러스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b>종합주가 지수</b>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100% 이하 투자</u></li> <li>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70% 이상</li> <li>■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li> </ul>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모투자신탁</p>

		<p>“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li> <li>-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li> <li>-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li> <li>-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은 40% 이내 투자</li> </ul> <p>“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p>	<p><b>택주식</b></p> <p>“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li> <li>-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li> <li>-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b>90%</b> 이상을 투자</li> </ul> <p>“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p> <p><b>(2)현대트랜스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b></li> <li>■ <b>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b></li> <li>■ <b>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 30%이하를 통해 안정적인 초과성과 창출</b></li> <li>■ <b>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 있는 초과성과 추구</b></li> </ul> <p><b>(3)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60% 이상 투자합니다.</b> 단,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li> <li>■ <b>핵심우량 강소기업 : 이익모멘텀과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강소기업에의 집중 투자</b></li> <li>■ <b>국면별 대형주 편입 : 경기국면별,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에 맞춰 대형 핵심우량주 편입비 조절</b></li> <li>■ <b>선별적 자산 배분 : 중기적 변화 포착시 선별적 주식 편입비 조절</b></li> </ul> <p><b>(4)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b></p>
--	--	---	--

			<p>택[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li> <li>■ 계량적 분석(Quant Score) 방식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퀀트(Quant)를 활용해 하이스코어(High Score)기업 추출 → 객관적인 밸류(value:가치) 유니버스(종목후보군) 선정</li> <li>- 수익가치, 자산가치 등에 대한 질적인 분석 → 투자 유망종목 선정</li> </ul> </li> <li>■ 지수전망에 의한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을 배제하고 종목 선택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내재가치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자산배분을 지양하고 종목선택 및 분석에 역량을 집중</li> <li>- 단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저평가 종목의 편입과 적정가 도달 종목의 순차적 매도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의 복리효과 기대</li> </ul> </li> <li>■ 대형 밸류주와 중소형 밸류주의 균형 갖춘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밸류주와 중소형 밸류주의 균형 갖춘 편입을 통해 위험대비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중소형 밸류주 중심의 타가치주 펀드와 차별적 성과 추구</li> <li>- 계량적 분석(Quant-Score) 단계에서 사이즈(Size)에 따른 밸류 유니버스(가치종목후보군) 이원화</li> </ul> </li> </ul>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2019.01.07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변경대비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	모자형 전환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요약정보〉 1. 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 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투자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70% 이상

			<b>으로 한다.</b>
분류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b>모자형</b>
<b>&lt;요약정보&gt;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b>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b>국내 주식</b> 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b>하는 집합투자기구</b> 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 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b>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 증권</b> 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b>합니다. 이 투자 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b> 은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 플러스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 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 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 니다.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및 모투자신탁 추가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60% 이상을 투자 - 기타 투자대상인 구조적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유관기업들 은 40% 이내 투자 “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b>&lt;추가&gt;</b>	<b>■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100% 이하 투자</b> 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 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신탁 재산의 70% 이상 <b>■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b>  <b>※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b> <b>(1)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모투자 신탁[주식]</b>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 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추구 - 지배구조 변화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수혜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 - 주 투자대상인 “현대그룹플러스” 기업들에 <b>90%</b> 이상을 투자 “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b>(2)현대투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 신탁[주식]</b> <b>■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 와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b>

			<p>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p> <p>■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p> <p>■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 30%이하를 통해 안정적인 초과성과 창출</p> <p>■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 있는 초과성과 추구</p> <p>(3)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 [주식]</p> <p>■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60% 이상 투자합니다. 단,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p> <p>■ 핵심우량 강소기업 : 이익 모멘텀과 구조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강소기업에의 집중 투자</p> <p>■ 국면별 대형주 편입 : 경기 국면별,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에 맞춰 대형 핵심우량주 편입비 조절</p> <p>■ 선별적 자산 배분 : 증기적 변화 포착시 선별적 주식 편입비 조절</p> <p>(4)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p> <p>■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p> <p>■ 계량적 분석(Quant Score) 방식의 활용</p> <p>- 퀀트(Quant)를 활용해 하이스코어(High Score)기업 추출 → 객관적인 밸류(value:가치) 유니버스(종목후보군) 선정</p> <p>- 수익가치, 자산가치 등에 대한 질적인 분석 → 투자 유망종목 선정</p> <p>■ 지수전망에 의한 마켓타이밍 (Market timing)을 배제하고 종목 선택에 집중</p> <p>-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내재가치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자산배분을 지양하고 종목선택 및 분석에 역량을 집중</p> <p>- 단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저평가 종목의 편입과 적정가 도달 종목의 순차적 매도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률의 복리효과 기대</p> <p>■ 대형 밸류주와 중소형 밸류주의 균형 갖춘 포트폴리오</p> <p>- 대형 밸류주와 중소형 밸류주의</p>
--	--	--	--

			균형 갖춘 편입을 통해 위험대비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중소형 밸류주 중심의 타가치주 펀드와 차별적 성과 추구 - 계량적 분석(Quant-Score) 단계에서 사이즈(Size)에 따른 밸류 유니버스(가치종목후보군) 이원화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작성기준일:2019.01.07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특정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자형 전환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다. 특수형태	모자형 전환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u>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자형 전환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추가> <추가>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u>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대트윈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현대그룹플러스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수익을 위해 구조적 성장주 또는 현대그룹플러스 기업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p>들의 유관기업들에 투자하여 종합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p> <p>“현대그룹플러스주식”이란 다음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 추후 각 계열의 변동 혹은 계열내 신규 편입되는 종목(기존 혹은 신규 종목 등)은 투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추가>	<p>■모투자신탁 : 100%이하(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70% 이상)</p> <p>▶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트트대한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10%이하</p> <p>※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p> <p>▶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트트대한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나. 투자제한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추가>	<p>※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p> <p>▶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트트대한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 리 및 수익구조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추가>	<p>■모투자신탁 : 100%이하(단,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70% 이상)</p> <p>▶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트트대한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10%이하</p>

			<p>※ <b>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p> <p>▶ <b>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p>▶ <b>현대트론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p>▶ <b>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p>▶ <b>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b></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추가>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혼합형 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향후 주식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동 주식 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4.52%임을 감안하여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혼합형 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동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b>작성기준일:2019.01.07</b>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라. 운용자산 규모 <b>작성기준일:2018.04.18</b>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추가>	<b>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b>

변경대비표(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자형 전환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 <b>자</b> 투자신탁1호[주식]
제2조(용어정의)	모자형 전환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u>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모자형 전환/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현대뉴현대 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다.</p> <p>6. &lt;신설&gt;</p> <p>③ &lt;생략&gt;</p> <p>④&lt;신설&gt;</p>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현대뉴현대 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다.</p> <p><b>6. 모자형</b></p> <p>③&lt;현행과 동일&gt;</p> <p>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현대뉴현대그룹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u></p> <p><u>2.현대튼튼대한민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u></p> <p><u>3.현대강소기업증권모투자신탁[주식]</u></p> <p><u>4.현대밸류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u></p> <p>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 호의 수익증권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제16조(투자목적)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u>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u>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b>현행 투자대상자산 사항은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반영</b>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u>1.제3조제4항 모투자신탁 수익증권</u></p> <p><u>2.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u></p>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b>현행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에 대한 사항은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반영</b>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u>1.제3조제4항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단,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u></p> <p><u>2.제17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u></p>

			<u>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u>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현행은 모두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반영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현행은 모두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반영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8조제1호의</u>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p> <p>2.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3.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모자형 전환에 따른 기재 사항 정정		<u>모자형 전환 관련내용 변경</u>

제7장 수익자총회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10장 보칙			
--	--	--	--

기 타 :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